

韩国商标法新旧对比 (2024.2.6 修订版与 2025.1.21 修订版)

상표법	상표법
[시행 2024. 8. 7] [법률 제 20200 호, 2024. 2. 6, 타법개정]	[시행 2025. 7. 22] [법률 제 20697 호, 2025. 1. 21, 일부개정]
제 57 조(출원공고) ①·② (생략)	제 57 조(출원공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특허청장은 제 2 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 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	③ 특허청장은 제 2 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 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제 60 조(이의신청)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 개월 내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	제 60 조(이의신청)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 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1.2. (생략)	1.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 110 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생략)	제 110 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·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 109 조에도 불구하고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 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	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·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 109 조에도 불구하고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 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
⑧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

韩国商标法新旧对比 (2024.1.21 修订版与 2025.5.27 修订版)

상표법	상표법
[시행 2025. 7. 22] [법률 제 20697 호, 2025. 1. 21, 일부개정]	[시행 2025. 5. 27] [법률 제 20965 호, 2025. 5. 27, 일부개정]
제 2 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 2 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“상표의 사용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	11. “상표의 사용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가.나. (생략)	가.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상품에 관한 광고·정가표(定價表)·거래서류,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	다.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
<신설>	라. 상품에 관한 광고·정가표(定價表)·거래서류,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